

레이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(안)

전라남도과 ○○○대학교는 기초과학 연구 및 첨단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레이저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전라남도과 ()가(이) 레이저를 활용한 기초과학 및 첨단전략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레이저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.

- 가. 레이저 교육과정 개설 및 전문인력 교류
- 나. 인력양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국가사업 공동 건의
- 다. 레이저 산학연관 협력 사업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
- 라. 레이저 구축장비 및 연구정보 공동 활용
- 마. 기타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정보교환) 각 기관은 협력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한다.

제4조(비용부담) 인력양성 사업을 위한 비용부담은 참여기관 간 협의에 따른다.

제5조(협약이행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추진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정하며,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사업완료시까지로 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 각 기관은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,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.

제7조(법적 구속력) 본 협약의 내용은 제6조(비밀유지)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, 구체적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.

각 기관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5월 일



도지사



총장